



# 프랑스 문화부, 스트림 리핑은 완벽하게 합법일 수 있다고 확인하다

조희우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2. 스트림 리핑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3. 프랑스 문화부의 판단 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최근 프랑스 문화부(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는 일정 조건 하에서 음악 및 기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트리밍 리핑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스트림 리핑 도구를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sup>1)</sup>

## 2. 스트림 리핑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스트림 리핑이란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악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다운로드 가능한 오디오 파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을 말한다<sup>2)</sup>. 현재 웹상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주소만 입력하면 쉽고 간편하게 유튜브의 스트리밍 동영상을 추출하여 영상을 mp3파일로 변환시켜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유튜브의 오디오 추출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사이트 방문으로 인하여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해내지만, 이에

1) <https://torrentfreak.com/stream-ripping-can-be-perfectly-legal-french-ministry-of-culture-says-210705/>

2) [https://en.wikipedia.org/wiki/Stream\\_ripping](https://en.wikipedia.org/wiki/Stream_ripping)

대한 수익은 해당 유튜브 영상의 창작자에게는 분배되지 않으므로, 과연 합법적인 서비스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창작자들은 보통 이러한 스트림 리핑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확신하지만, 많은 국가의 저작권 법상 이러한 스트림 리핑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예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저작권의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다.

많은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효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유가 공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 즉, 공정이용(Fair Use)<sup>3)</sup>을 '사용 목적과 사용 성격,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복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건 하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공정취급(Fair Dealing)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sup>4)</sup>. 프랑스 역시도,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 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등을 저작권 효력 제한의 경우로 본다<sup>5)</sup>.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7조).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한다.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3)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4) 비상업적 목적의 조사를 위한 저작물의 사용,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단, 음악저작물, 음악을 포함한 음반, 방송이 고의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음) 등. 또한, 2014. 10. 1.자로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매체나 기기에 옮기는 것m 포맷변경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복제를 허용하였다(영국 저작권법 제28B조)

5)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전 제122조의 5 등

복제, 방송사업가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복제 등이 그것이다(저작권법 제23조 이하).

### 3. 프랑스 문화부의 판단 내용 및 국내법과 비교

본 건에서는 위 효력 제한 규정 중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문제된다. 2021. 6. 25.자 최근 개정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이하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 5에 따르면 저작권 효력 제한 사유로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물)를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만들어지고, 복제자의 사적사용을 위해 엄격히 보존되며 집단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사본(Les copies ou reproductions réalisées à partir d'une source licite et strictement réservées à l'usage privé du copiste et non destinées à une utilisation collective)'으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프랑스 문화부는 "스트림 리핑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질 경우 합법이다. 복제 결과물은 '사적 이용'에 해당한다. 그 조건으로 ①사용자의 요청 하에 적법한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하고, ②컨버터기에 의한 별도의 저장이 없어야 하며, ③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가 없어야 한다 (Stream-ripping is legal and the resulting copy falls under the exception for private copying as provided by law, if several conditions are met: it must be made from a lawful source at the request of the user, without being stored by the converter, and no circumvention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must be carried out)"라고 판단하였다<sup>8)</sup>.

첫 번째, '적법한 원본' 요건은 프랑스 저작권법상 저작권 효력 제한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sup>9)</sup>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과 같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는 원저작물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적 복제 허용이 저작권 침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0)</sup>.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하급심 법원에서 유사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

6)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에 대응한다.

7)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 op.cit.

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제122조의 5 2호

10)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사적 복제의 허용 조항에서 '원본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수진(2015), 디지털 시대의 사적복제에 대한 고찰 - 영국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고 판단하여,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sup>11)</sup>.

두 번째, 스트림 리퍼, 즉 변환 사이트 측의 별도 저장이 있는 경우 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변환 사이트가 이러한 리핑 결과물을 별도로 저장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사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 리핑 결과물을 복제, 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변환 사이트의 별도의 목적 하에 리핑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사적 목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변환 사이트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변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통의 변환 사이트는 변환을 위해 유입되는 이용자들에 대한 광고 수입 등을 얻기 때문에 이를 사적 복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에 관하여, 관련 근거를 프랑스 저작권법 제331조의 5 이하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무단이용의 제한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술적 조치<sup>12)</sup>는 프랑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sup>13)</sup>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 보호 조항은 앞서 살펴본 사적 복제의 예외 조항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 만일 위 기술적 조치가 어떠한 복제라도 전혀 못하도록 설치된다면 앞서의 사적 복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법 제331조의 7 및 10 등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장치하는 저작권자는 동 기술적 조치로서 복제 가능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이러한 기술적 조치는 동법상 보호를 받고), 위 사적 복제를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에 근거하는 혜택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위와 같은 조항으로서 위 기술적 조치의 보호와 사적 복제의 허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 문화원의 스트림 리핑에 의한 본 요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프랑스 저작권법에 규율된 정도의 기술적 조치 보호 조항마저 우회 또는 무력화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1) 이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입법론적 교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박준석 (2010),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조협회, 법조 Vol.59 No.1, pp. 241-299]. 2009. 6. 19.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위법송신을 알고 수신한 경우를 사적 복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기술적 조치는 해당 조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기술, 장비, 및 부품을 말하고,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자의 통제, 비밀번호, 암호술, 전파방해 또는 그 밖에 보호대상의 변형 또는 복제를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보호목적 달성하는 경우여야 '유효한'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13) 우회 또는 무력화 금지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따로 규정된 예외사유(하기 표 참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저작권법 제104조의2).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로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sup>14)</sup>.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각 호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 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기관이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b>*위 8호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b> <b>[시행 2021. 2.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 2021. 1. 31., 일부개정]</b>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14)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위 각주에서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조항의 예외를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는 예외의 효력을 3년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로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것으로 보인다.

①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의 일부를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③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④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스마트 TV 또는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또는 위 휴대용 정보처리장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3. 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이식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에는 환자에 의하여 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

-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정한 재료 이외의 대체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 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⑩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 ⑫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 4. 나가며

디지털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 등으로 면책된 사적 영역에서의 복제물들이 전전 유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있어서는 창작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면책의 범위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조항을 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예외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sup>15)</sup>. 위 프랑스 문화부의 입장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15)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 수단 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된 복제인 경우에는, 그 복제는 그 저작물등의 제공의 전제를 뒤집는, 원래 상정되지 않은 복제로서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이 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서 일본에서는 사적 복제의 예외로서 입법되어 있다(文化庁=通産省編前掲94頁)